

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<h1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도자료</h1>	2015. 10. 20(일)	
		작성 · 문의	<p>국무조정실 규제정책과 과장 김희순 / 사무관 한태경 (Tel. 044-200-2431)</p> <p>국무조정실 규제혁신과 과장 노혜원 / 사무관 김신영 (Tel. 044-200-2415)</p> <p>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팀장 김성수 / 사무관 김성환 (Tel. 02-6050-3294)</p>
10.20(화) 16시(회의종료) 이후 사용			

제2차 황교안 총리 주재 규제개혁점검회의의 결과

- 황교안 총리, 규제비용 경감 등 규제개혁 추진 7대 원칙 발표
- 광주전남 기업인 규제애로 청취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규제애로 해결

□ 정부는 10월 20일(화)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광주광역시 테크노파크에서 관계부처, 광주광역시장, 전남도지사,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'제2차 규제개혁 점검회의'를 개최하였다.

□ 이날 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'규제개혁 추진 7대 원칙'을 발표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.

○ 7대 원칙은 다음과 같다.

① 규제신설 원칙적 억제

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경제적 규제의 신설을 원칙적으로 억제할 것

② 규제비용 부담경감

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 새로운 규제를 신설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의 기존 규제를 삭감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경감할 것

③ 원칙허용·예외금지 규제방식(네거티브 규제방식)

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경우,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

④ 기존규제 체계적 정비·관리

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등록규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제기준에 어긋난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정비·관리할 것

⑤ 불합리한 지방규제 신속 정비
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등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신속히 정비할 것

⑥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

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, 소극적 업무처리에 대하여는 오히려 책임을 물을 것

⑦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

규제개혁 업무에 헌신한 유공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·포상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

- 7대 원칙을 발표한 황 총리는 “정부는 확고한 원칙 아래 국민들이 변화를 현장에서 체감할 때까지 규제개혁을 계속 강도높게 추진해 나가겠다”고 강조하였다.
- 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* 등 지방규제개혁 추진현황을 보고하였다.

* 파워포인트 자료 별첨

- 국무총리는 이어서 광주광역시와 전남 완도군의 규제개혁 우수사례와 광주·전남지역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낀 규제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청취하고, 민관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으며,
-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이번 개선 조치들이 기업의 설비투자, 정부 조달 참여 확대,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었다.
- 건의되어 개선이 이루어지는 주요 개선사례는 다음과 같다.

① 적극적인 법령 적용으로 설비투자 애로 해결 (LG화학)

- 여수산단에 위치한 LG화학은 1976년부터 924천㎡의 부지에서 지금까지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해왔으나, 추가 설비투자가 필요해 인근 부지 615천㎡을 매입하였다.
- 그런데 LG화학의 경우 구 공장부지와 신규예정 부지 사이에 하천을 경계로 공장등록부상 분리되어 있는 등 비점오염저감 시설을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쾌한 적용이 어려웠다.
- *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가 된 사업장은 부지면적이 30/100이상 증가하는 경우,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가 의무화
- 이에 국무조정실과 환경부가 공동으로 현장방문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한 결과 신축 부지 한 곳에만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해도 가능하다는 규정해석으로 설비투자 지연문제가 일거에 해소되었다.

② 첨단기술 산업, 신속한 애로사항 해결 (지앤씨)

- 광주첨단국가산업단지에서 풍력발전기 등을 생산하는 지앤씨는 제품 다변화를 모색하여 대표적인 첨단기술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3D프린터 개발에 성공하였으나, 산업단지 입주와 공장등록 등 경영 활동 과정에서 애로가 발생하게 되었다.

- 산업단지 입주업종 판단시 명확한 업종 분류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'3D프린터 제조업'을 '컴퓨터프린터 제조업(26323)'으로 해석하면서 첨단산단 입주업종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.
-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통계청에 개선을 협의 하였으며, 통계청은 신속하게 대처하여 '15년 10월까지 3D프린터 제조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 코드 색인에 반영기로 하여 이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.

③ 중소 조선업체, 정부 조달 쉬워졌다. (푸른중공업)

- 300톤 미만 중소 조선업체들이 정부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직접생산증명서 및 선박생산 실적증명서 제출이 필요하지만, 관련규정 등이 까다로워 입찰 참여가 어려웠다.
- 그동안 중소기업 직접생산증명서는 선박제작시 필요한 선대가 바다에 접해있어야 발급이 가능했지만, 300톤 미만 선박들의 경우에는 육지에서 제작 후 바다로 간단하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.
- 또한, 해외에서 수주한 선박생산 실적을 증명하는 자료들이 입찰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.
- 이에 대해 조달청, 중소기업청 등 관련부처는 현장을 확인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입찰행정 개선 등을 신속히 마무리해 금년 하반기부터 정부조달 입찰이 가능하게 되었다.

□ 정부는 앞으로도 지역에 산재해 있는 규제 현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하고, 규제개선 성과가 현장에서 제대로 미칠 수 있도록 밀도있는 점검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.

- 황교안 국무총리는 “중앙과 지방이 협업해야만 전정부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규제개혁이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”면서 “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상호협력하여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광주 · 전남지역 현장건의 규제개선 과제

건의과제	소관부처	당초 부처의견	협의를 결과
1. 공장증설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의 합리적 기준 적용 (LG화학, 여수) * 신규부지에만 비점오염원방지시설 설치 요구	환경부	수용 곤란	수용
2. 농공단지내 자체폐수처리시설 허용 (참프레, 부안) * 조업확대를 위한 부안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허용 요청	환경부	일부 수용	일부 수용
3. 한국표준산업분류‘3D프린터 제조업’분류기준 마련 (지앤씨, 광주) * 업종분류 부재로 산단 입주 등의 애로 발생	통계청	일부 수용	수용
4. 중소 조선업체 조달 참여 및 실적인정 기준 명확화 (푸른중공업, 대불산단) * 직접생산 확인서 및 납품실적 불인정으로 입찰 참여 애로 발생	조달청	수용	수용
5. 한시적 즉석판매제조·가공업 타지역 영업신고 방식 개선 (광주전남지방중기청, 전남) * 한시적(1개월 이내)으로 즉석판매 제조 가공 영업 신고시 직접 방문하는 불편 해소	식약처	수용	수용
6. 육상해수양식 어업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허가 완화 (완도군청, 전남) * 시설물 구조변경이 없을 경우 허가 연장되도록 요청	해양 수산부	일부 수용	일부 수용
7. 광주 광산업 임대단지 분양 전환 및 전대 허용 (옵토닉스, 광주) * 광산업 임대 산단 부지(광주시 소유)에 대해 분양 전환 또는 전대 허용 요청	광주 광역시	수용 곤란	일부 수용

① 공장증설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의 합리적 기준 적용

- (건의 및 애로사항) 부지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여도 법 시행 이전의 기존부지에 대하여는 저감시설 설치의무 면제
 - 공장 외곽부지는 녹지시설 조성으로 비점오염물질 배출이 없음
 - 기존 부지 건축물 및 설비시설로 저감시설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
- (조정결과) 기존부지와 증가된 부지가 공장등록부상 분리되어 있으니, 면적산정 시에도 별산하여 신규부지에만 비점오염원방지시설 설치
 - ※ 비점오염원 : 토지표면에 축적된 오염물질이 강우에 의해 불특정장소 (non-point) 에서 유출되어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배출원

② 농공단지내 자체폐수처리시설 허용

- (건의 및 애로사항) 조업 확대를 위해 농공단지 내 자체폐수처리시설 설치 허용 지침 개정 또는 제3농공단지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
- (조정결과) 부안 제3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을 조기에 완료 하여 사업자 요청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
 - 공사기간 등을 최대한 단축 (25개월→20개월)하여 자체폐수처리시설 설치와 동일하게 2017년 5월부터 정상조업 가능
 - 자체폐수처리시설 설치 허용은 농공단지 조성 목적상 오염원의 집적 관리와 입주제한에 위배되고 농공단지 폐수의 공공관리 필요성으로 수용이 어려움

③ 한국표준산업분류 '3D프린터 제조업' 분류기준 마련

- (건의 및 애로사항) 3D프린터 제조업에 대한 분류코드가 마련되지 않아 산업단지 입주, 공장 등록 등에 있어 어려움
- (조정결과) 통계분류포털 색인어를 통해서 분류체계를 마련할 계획 (10월 중 완료)
 -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작업에서 별도의 분류코드 신설 여부 검토 (2017년 1월 개정안 고시)

④ 중소 조선업체 조달 참여 및 실적인정 기준 명확화

- (건의 및 애로사항) '직접생산 확인서' 및 '납품실적 불인정' 등으로 입찰 참여 등에 애로발생
 - 실적인정 기준이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있는 현실을 미 반영
- (조정결과) 중소기업체의 여건을 감안하여 개별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실적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등 위배사항이 없을 경우 적극적으로 인정

⑤ 한시적 즉석판매제조·가공업 타지역 영업신고 방식 개선

- (건의 및 애로사항) 영업신고시 간단한 서류 확인 방식의 확인 공문을 발급받기 위해 관할 관청에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 해소
 - ※ 식품업체는 타 지역의 식품행사 참여를 통한 제품 홍보 및 판매가 매우 중요
 - 관할 관청 방문이 필수이므로 업체의 인력 및 시간 낭비 등 불편을 초래
 - 이동·보관중인 식품이 변해 버리는 경우도 발생함
- (조정결과) 영업자 편의 및 행정절차 개선을 위하여 즉석판매 제조·가공업의 한시적 영업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새울행정시스템 민원 신고 기능 개선 조치 계획 ('16. 4)

⑥ 육상해수양식 어업 허가기간 만료시 허가 연장 요구

- (건의 및 애로사항) 기존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대상의 시설물이나 구조물 등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연장 허용
 - ※ 육상 해수양식어업 허가기간은 5년으로 기간이 만료되면 신규허가 대상
- 허가기간 만료 후 신규 허가 신청시와 동일하게 시설의 계획서, 설계도, 배치도 등 모든 서류를 다시 갖춰 신청해야 하기에 시간적·경제적 부담
- (조정결과) 시설물이나 구조물 등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에 제출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음
 - 허가기간 연장은 기존 허가·면허 체계의 근간을 변경하여야 하는 사안으로 중장기적 검토 대상임

⑦ 광주 광산업 임대단지 분양 전환 및 전대 허용

- (건의 및 애로사항) 초기 임대차 계약서의 조항을 원상복구하여 입주후 5년이 경과한 기업이 희망시에는 분양전환 및 전대를 허용
 - 부지는 광주시 소유이고, 건물은 임대종료 후 원상복구 해야 하므로 담보여력이 없어 사업확장 등 금융대출 등에 애로
 - 협력사·계열사 등의 연관 업종인 경우에는 동반 입주가 필수적임
 - ※ 반면, 입주초기에는 저렴한 임대료로 입지비용이 절감
- (조정결과) 실현 가능한 전대를 적극 검토하고, 차세대 광산업 클러스터로 도약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용역 추진
 - 광산업 집적화단지 개선방안 및 추진계획 마련
 - 광산업 임대단지 분양 전환 등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 연구용역 ('16. 3월)
 - ※ '10. 8월 분양전환시 광산업과 무관한 전기 등 제조시설이 입주하여 광클러스터 단지 퇴색